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적 극 행 정 운 영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로 하여금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이 법률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며, 적극행정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6. ~ 11.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1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 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연임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 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차례 연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의무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

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소명이 필요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생략)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u> <u>분</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 ⑦ (생략) ⑧ <u>제1항부터 제7항까지</u>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u>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u> ----- ----- ----- -----.

<신 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2. (생 략)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무원 (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 을 포함한다)-----

----- 해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u>공무원</u>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 설></u> ④ (생략)	③ ----- <u>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 다)</u>----- ----- ----- -----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420